

의안번호	제호
의결일	2018. . .
연월일	(제회)

의결사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이 개정 (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증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차본금의 출자)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 출자절차 등을 「상법」 준용(안 제29조의2)
- 나. (각종 등기 등)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설립 등기 및 설자·이전·변경등기 시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기간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3 ~ 안 제29조의8)
-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위촉위원회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

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안 제29조의9)

라.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

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제적·회피사

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균형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

29조의10)

마. (대리인의 선임)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

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안 제29조의11)

바. (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국토교통부 장

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으로 정함(안 제29조의12)

사. (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안 제29조의13)

아. (해외건설전문 투자용인력)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의 직무분야, 종사기관 등 확대(안

제23조)

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

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영기업, 지방공단으로 함(안 제10조제2항)

차. (해외설계 전출전략 수립) 효과적인 해외인프라 진출확대를 추진하

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 추진계획내용에 ‘해

설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4. 주요 도의 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전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벌금 및 추징,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본금의 출자)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 출자질적 등을 「상법」 준용(안 제29조의2)
- 나. (각종 등기 등)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설립 등기 및 설치·이전·변경등기 시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기간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3 ~ 안 제29조의8)
-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위축위원회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안 제29조의9)

라.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제척·회피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29조의10)

마. (대리인의 선임)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안 제29조의11)

바. (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으로 정함(안 제29조의12)

사. (차임)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안 제29조의13)

○. (해외건설전문 투자율용인력)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의 직무분야, 종사기관 등 확대(안

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으로 함(안 제10조 제2항)

차. (해심국 진출전략 수립) 효과적인 해외인프라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 추진 계획내용에 '해심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해외건설 축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심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

제10조 제2항 후단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에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건설 직무분야"를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로 하고, 같은 목에 6) 및 7)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7장 감독을 제8장 감독으로 하며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29조의3(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2(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체조합

7.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상법」 제290조제2호, 제295조, 제298조, 제305조, 제310조, 제421조 및 제422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3(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회사가 벌행할 주식의 종수
4. 애면주식을 벌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종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사장의 성명과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의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

제29조의4(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월공사가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

에 지사의 명칭,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29조의3제1호, 제2호, 제5호(다른 지사등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제6호의 사항 및 지원공사·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조의5(이전등기) ① 지원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9조의3 각 호의 사항

② 지원공사가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제29조의4제2호의 사항

제29조의6(변경등기) ① 제29조의3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

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의7(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9조의8(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제29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등기 신청의 정관에는 법 제28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등기의 신청서 첨부서면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첨부서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의 인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9(윤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8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의 자격은 법 제28조의7 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적되고,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정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자를 밟히는 경우

- ⑤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1(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등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28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공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29조의12(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9조의13(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금을 차입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신설>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외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
4. 그 밖에 해외건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 ①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	5. 그 밖에 해외건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업을 말한다.

	<p><u>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u></p> <p>2. <u>국내 도시개발·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토지측량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u></p> <p>3. <u>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u></p> <p>4. <u>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u></p> <p>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p> <p>제20조의3(해외 건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p> <p>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2. (생략)</p> <p>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생략)</p>
--	--

<p>1. (생략)</p> <p>2. (생략)</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생략)</p> <p>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3) ~ 5) (생략)</p> <p>6) <신설></p> <p>3) ~ 5) (현행과 같음)</p> <p>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p>
--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
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
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신설>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
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사람

2. (생 략)
② (생 략과 같음)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기원공사

<신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

28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기원공사(이
하 “자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
을 출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로 한국무역보험공사

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로 국민연금공단

6.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체조합

7.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
인공제회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
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자
본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상법
제290조제2호, 제295조, 제298
조, 제305조, 제310조, 제421조
및 제422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3(설립등기) 법 제28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
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

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

(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

제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의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10. 사장의 성명과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의

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

의 사항

제29조의4(지사등의 설치등기)) 지

원공사가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사의 명칭,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에서는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

내에 제29조의3제1호, 제2호, 제

5호(다른 지사등의 소재지는 제

외한다), 제6호의 사항 및 지원

공사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조의5(이전등기) ① 지원공사

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

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9조

의 3 각 호의 사항

② 지원공사가 지사등을 이전하

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

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사등

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는 제29조의4제2호의 사항

제29조의6(변경등기) ① 제29조의3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의7(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9조의8(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제29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에 따른 등기 신청의 정관에는

법 제28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의 등기의 신청서 첨부 서류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첨부 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의 인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8제2항의 대통

령으로 정하는 위원의 자격은 법 제28조의7 제2항 각 호의 삼의 · 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작되고, 지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차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 그 임원)이거나 그 안건의 당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료, 연구, 응역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8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보호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기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9조의11(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등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

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28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공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 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29조의12(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또는 그他の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펼쳐야 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9조의13(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

제금융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장 감독

제30조 ~ 제36조 (생략)

제30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언 라 쳐	(044) 201 - 4813